메爬⋒┕양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7회 (02/25)

- 1. 주거화경개선사업이 스스로 주택 보전·정비 개량하는 방법 또는 화지방법으로 시행되 는 경우에 해당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()
- 2.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(이하 "정비구역등"이라 한다)에서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 ()
- 3. 정비구역등(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'스스로개량방식'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. ()
- 4.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. 부대시설·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. ()
- 5.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등. 토지주택공사등,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 ()
- 6.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임차권자를 말한다. ()
- 7.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)
- 8.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・고시 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. ()
- 9.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. ()
- 10.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. 부대시설 ·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. (

- 11. 시장·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, 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용제한 · 사용금 지.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,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"지정개발자"라 한다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()
- 12.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(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·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(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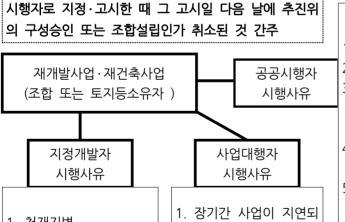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2. (O)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.

3. (O)

[참고 정리]

[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]



- 1. 천재지변
- 2.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
- 3.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 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
- 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 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토지등소유자(조합을 설 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 한다)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

- 1. 천재지변.
- 2.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X
- 3. 추진위가 시장·군수등의 승인후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 가를 신청 X or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X
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 · 군계획사업과 병행 하여 시행할 필요
- 5.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
- 6.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
- 7. 국·공유지등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 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에 동의
- 8.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·군 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자 지정 요청

께쌛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7회 (02/25)

- 4. (X)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이다.
- 5. (O)
- 6. (X) 임치권자가 아니라 지상권자가 해당한다.
- 7. (X) 군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.
- 8. (O)
- 9. (X)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. 해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.
- 10. (X)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해당한다.
- 11. (0)
- 12. (X)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(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